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해진 보도에 대해 현실적 악의를 인정하여
1 천만 달러의 징벌적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Prozeralik v. Capital Cities Communications Inc.
21 Med. L. Rptr. 1073(뉴욕주 제 4 항소법원, 1993)

사건개요

1. 원고는 뉴욕주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4 개의 식당, 2 개의 호텔,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항공사업을 시작하려던 중견실업가이고, 피고는 WKBW-TV Channel 7 과 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한 법인이다.

2. 1982. 5. 6. 피고소유의 WKBW-TV channel 7 은, 어떤 남자가 치크토와가에 있는 하워드
존슨 모텔로 납치되어 구타당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그 남자와 조직범죄단과의
금전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한편, 치크토와가 경찰과 FBI 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 방송국과 경쟁관계에 있던 Channel 4 는 같은날
저녁 11 시 뉴스에서 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David Pasquantino 라고 정확히 보도하였다.

3. 피고소유 Channel 7 의 뉴스관계자들은 같은달 7 일 아침에 회의를 갖는 도중 화제가 위
구타사건에 이르러 그 피해자는 유명한 식당경영자라고 하더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뉴스편집부 책임자인 Nancy Sanders 는 피해자가 아마도 원고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발언을
하였는데, 그것은 Sanders 에게 원고의 성명이 처음 머리에 떠오른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뉴스책임자 인 Bruce Corris 는 Cindy DiBiasi 기자에 게 FBI 에 피해자가 원고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Cindy DiBiasi 기자는 FBI 의 특별수사관인 John Thurston 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 통화내용에 관하여 Thurston 은 통화당시 원고의·이름도 몰랐으며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DiBiasi 는 자신이 Thurston 에게 원고이름을
대자 다른 연락이 없는 한 그대로 써도 좋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4. DiBiasi 기자는 기사를 작성해서 12 시 뉴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방송하였다.

「FBI 는 어제 발생한 납치즉행사건의 피해자로 John Prozeralik(원고)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는 조직범죄와의 금전거래로 다툼이 생겨, 하워드존슨 모텔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얻어

맞았다고 한다.) 한편 피고 경영의 라디오 방송국도 같은날 3 번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5. 원고는 피고방송국의 뉴스책임자인 Steven Ridge 에게 그 보도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Ridge 가 이에 따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같은날 오후 늦게 원고를 조직범죄 관련 납치 폭행의 피해자로 보도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Thurston 도 Ridge 에게 자신이 DiBiasi 기자에게 원고의 이름을 확인해 준 바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에 Ridge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같은 날 저녁 6 시 및 11 시 뉴스에 방송하였다.

「피해자는 Prozeralik 이 아니다. FBI 는 오늘 아침 피해자가 Prozeralik 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나, 우리가 다시 조사해 본 결과 그는 관계없는 것이 판명되었다. 실제 피해자는 조직범죄단과 결탁되어 마권영업에 손댄 David Pasquantino 라고 한다.」

6. 원고는 뉴욕주 지방법원(나이아가라 카운터)에 피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제소하여 배심원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 배 상으로 약 1 천 8 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나,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하여는 그 손해액을 감축하여 총 1 천 5 백 40 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정신적 고통 및 명예훼손 4 백만 달러 ; 직접적 재산상손해 1 백 40 만달러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 1 천만 달러)

7. 이에 피고는 i)원고는 공공적 인물(public fore)이므로 잘못된 보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ii) 수치, 정신적 고통 및 명예훼손으로 4 백 만달러, 그리고 징벌적 손해로 1 천만달러의 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판결요지(다수의견)

Callahan 판사, Green 판사, Boehem 판사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일건 증거에 의하면 원고를 조직범죄관련 피해자로 보도한 방송국의 잘못은 뉴스룸에서의 근거없는 추측에 기한 것이었고, FBI가 사실상 원고의 성명을 확인해 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방송국이 위 보도를 함에 있어 현실적 악의가 존재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2. 이 사건에서는 라디오 방송국이 TV의 뉴스보도를 그대로 따라(republish)하였는데, 피고는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 이들은 동일기업의 일부분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라디오 방송에서 의 명예훼손보도에 관하여도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TV 방송국이 정정보도를 함에 있어 FBI가 피해자를 전에 원고라고 확인한 바 있다는 취지의 보도도 이 사건 일건증거에 의하면 뉴스책임자가 FBI 수사관으로부터 원고의 성명을 확인해 준 바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이 인정되므로 역시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하여진 것이다.

4. 배심원이 피고에 대하여 수치, 정신적 고통 및 명예훼손으로 4백 만달러를 명한 것은 과대하지 않다.

5. 수정헌법 제 1 조(First Amendment)나 뉴욕주 헌법에 의하여도 언론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공공의 인물이 언론이 진실을 무모하게 무시하고(reckless disregard of truth)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1 천만달러 정도의 금액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과 같은 무모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제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징벌적 손해 1 천만달러는 적절한 금액이다.

판결이유(요약)

I. 기록상 현실적 악의 유무판단

1. 피고의 방송내용을 둘러칠 정황에 관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관한 잘못된 보도를 함에 있어 현실적 악의-즉,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주관적으로 그 내용의 진실여부에 심각한 의심을 품은 상태(knowing they were false or subjectively entertaining serious doubt as to their truth)-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명료하게 인정할 수 있다(Bose Corp. v. Consumers Union of the United States, Inc, 466 U.S. 485, 511).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를 조직범죄의 피해자로 보도한 것은 오해(misunderstanding)로

인한 것이 아니라, 뉴스룸에서의 근거없는 추측에 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FBI 수사관 Thurston의 증언은 신뢰할 수 있으므로, 12시 뉴스의 원고에 관한 보도는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high degree of awareness of probable falsity) 행해진 것이다.

2. 회사에 의하여 오보가 행하여진 경우 그 판단은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범위내(all relevant corporate activity)민가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WKBW 라디오가 TV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따른 부분에 관하여도 책임이 있다.

3. 일건 기록에 의하면 2회의 정정보도도 그 자체의 문면이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배심원에게 그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이를 법률상 당연히 허위인 것으로 취급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당하다. 제반정황에 의하면 위 정정보도시 Ridge는 그 정정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품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보도는 허위인 것을 알거나 또는 그 진실성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false or not)한 경우에 해당한다.

II.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액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배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데 (Toomey v. Farley, 2NY2d 71,83), 피고에 대하여 수치, 정신적 고통 및 명예훼손으로 4백만달러를 명한 것이 원고가 영위하던 사업의 규모, 사업가로서의 평판, 이 사건 허위보도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 등에 비추어 정당한 보상액에서 중대하게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공공의 인물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명하는 것이 연방헌법과 주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였다는 점, 즉, 보도내용의 진부를 무모하게 무시하였다는 점(reckless disregard of the truth or falsity)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구체적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지의 여부 및 그 금액은 제 1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 문제이고, 그 항소심에서도 쉽사리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1 천만달러는 피고의 자산에 비추어 피고로 하여금 다시는 무모한 행위를 반복하지 아니하게 할 효과가 있을 정도의 금액이다.

본 재판부는 다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지 아니하고 행사함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과념하고 있으나, 그러한 표현의 자유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무모하고 무책임한 손해를 가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견

Lawton 판사와 Doerr 판사의 소수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심법원이 배심원에게 2 회의 정정보도(오후 6 시 및 11 시 뉴스)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이를 법률상 당연히 허위인 것으로 취급하라고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 DiBiasi 기자는 자신이 FBI 수사관인 Thurston에게 전화하여 원고이름을 지명하자 다른 연락이 없는 한 그대로 써도 좋다고 하였다고 증언하는데, 만약 위 DiBiasi의 증언을 신빙할 수 있다면 이는 결론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 따라서 원심법원은 부당하게 배심원의 권한을 제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2. DiBiasi 기자와 Thurstone 수사관의 통화내용에 관하여 당사자의 틀린내용이 엇갈리므로 원고는 2 회의 정정보도(오후 6 시 및 11 시 뉴스)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범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하여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오보 당시 그 보도를 청취한 대다수의 주민이 원고가 조직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였다는 점, 위 오보에 따라 원고가 인구에 회자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상이 밝혀져 오히려 그 관심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명예훼손소송으로 옮겨졌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에 대하여 수치, 정신적 고통 및 명예훼손으로 4 백만달러를 명한 것은 정당한 보상액에서 중대하게 일탈한 것이다.

4. 부통법상의 악의(common law malice, 즉 피고의 행동에 원고를 해하려는 주관적 해의가 있었다는 점)가 입증되지 아니 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는 의문인데, 이 사건에서는 부통법상의 악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기록이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1 천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대한 것이다. 특히 공공의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자유를 심히 억압함에 비추어 엄격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